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555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1.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자원 등의 기술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redacted]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4. 19.부터 [redacted]구 C, 8층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7. 1. 12. 이 사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D공사로부터 [redacted]구 E 대 1,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억 8,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30,16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7. 3. 1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59,44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0. 원고가 당초 신고세액의 일부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인 285,420,09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지점의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7. 1. 12.)로부터 5년 이전에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전인 2012. 1. 12.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 판단하면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사무소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중과대상에 해당.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1. 12.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1]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라 부령의 명칭 부분인 "안전행정부령"이 "행정자치부령"을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변경된 바가 없어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과 모두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현행'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다) 제27조 제3항의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의미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바,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점 역시 위 사무소 등에 해당한다(이하에서는 편의상 법문의 "등록대상 사업장"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이미 등록을 마친 사무소 등은 '등록된 사업장'이라 하고, 아직 등록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사무소 등만을 '등록대상 사업장'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두고, 위 지점의 설치일인 2007. 4. 19.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설치 이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적용된다면, 중과대상인 대도시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사실상 설치'한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직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의 지점이 사실상 설치되지 아니하였는바, 아직 중과된 취득세율의 적용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2)]

2) 피고[3)]

---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처분사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근거할 경우에 대한 예비적 주장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이 아닌 송파 지점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가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대상이 되는 사무소 등의 범위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확대 ·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지점과 같이 지점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중과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설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2014. 1. 1.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로소 중과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지점이 물리적으로 설치된 시점은 2007. 4. 19.이지만, 지점 설치 후 부동산 취득이 5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2014.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와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후단

항 전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도 함께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근거한 피고의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규정'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 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고, 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이하 '중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사무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 및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하여 보면, 후단 규정에 따라 5년의 중과세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무소 등의 설치일은 등록대상 사업장인지, 등록된 사업장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사무소 등의 실제 역사적 · 물리적 설치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등록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4. 1. 1.을 기준으로 위 중과세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그 중과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이 개정된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과세물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인 후단 규정 및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후단 규정 및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5년의 중과세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이 되는 기준일은 법문 그대로 '사무소 등의 실제 설립 · 설치 · 전입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물론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 기준일을 등록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4. 1. 1.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 1. 1.>은 위 규칙을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된 이유가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개정으로 사무소 등의 범위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하여 '5년'이라는 중과세기간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위 규정이 중과세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5년의 중과세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등록대상 사업장이든 등록된 사업장이든 후단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과세기간을 새로이 2014. 1. 1.부터 기산하여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중과세기간 도과 여부를 등록대상 사업장의 실제 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등록대상 사업장의 설치 이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 이전인 2013. 12. 31. 이전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2014. 1. 1. 이후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받게 되는바, 부동산 취득 시점에 따라 법률적인 취급을 달리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으로써 사무소 등의 범위가 확대·변경된 이상, 그 개정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과 달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예정한 결과일 뿐 불합리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법규가 개정된 이상 부동산 취득 시기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중과세기간의 도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여부에 대한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을 관철할 경우, 2014. 1. 1. 이전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기간이 몇 년이 경과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는 무조건 2019. 1. 1.에 이르러서야 중과세율의 적용 없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2014. 1. 1. 이전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와 그 이후에 설치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등록된 사업장 외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에게만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5년'이라는, 법규가 요구하지 않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5년'이라는 중과세기간 요건과 관련하여서만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이 중과세기간 요건과 나머지 취득 요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중과세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무소 등의 설치일은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후단 규정 및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실제 역사적 · 물리적 설치일인 2007. 4. 19.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17.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별지 1]

경정거부처분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취득세	당초신고	11,280,000,000	902,400,000	451,200,000	451,200,000
	경정신고	11,280,000,000	451,200,000	225,600,000	225,600,000
	경정청구금액	0	△451,200,000	△225,600,000	**△225,600,000**
지방교육세	당초신고	225,600,000	135,360,000	67,680,000	67,680,000
	경정신고	225,600,000	45,120,000	22,560,000	22,560,000
	경정청구금액	0	△90,240,000	△45,120,000	**△45,12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부칙<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 1. 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8

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